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 〉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9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안 제6조제1항)	2
※ [참고] 타 입법례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달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7.

다. 회 부 일 : 2026.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안 제6조제1항)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u>위하여 5년마다 이스포츠</u>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¹⁾(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6조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과 이스포츠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교류,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가장 최근 기본계획은 2015년에 발표된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인 것으로 나타남³⁾.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을 발표한 뒤로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이스포츠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즉 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할 경우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스포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다만, 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명시한 수립 주기(5년)는 과거 행정 실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법률명	개정연혁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1. ~ 5.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u>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u>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